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5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 임오경 · 박 정 · 서영교

문정복 · 차지호 · 위성곤

임미애 · 민병덕 · 김남희

한민수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험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이 경우 수립 또는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 |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 |
| 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 | 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 |
| <u>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u> |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
| <u>청장은</u>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 | 청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
| 수집 • 보관 • 선별 및 처리할 |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 |
|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
| 다. | <u>자는</u> |
| | |
| | |
| | <u>.</u> |